

◆ 政府 施策 ◆

輸入先 多邊化 품목 일부 해제 – 전선등 25개 완전 해제 –

통상산업부는 '93년 7월에 마련된 수입선 다변화 제도 운영 방침에 따라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등 25개 품목을 '96년도 해제대상 품목으로 지정, 1月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의 전기드릴등 일부품목은 부분해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수입선다면화품목은 현재 187개에서 내년 1월부터는 162개로 줄어들게 된다.

통신부는 이번 해제대상품목 선정과 관련, ▲장기간 지정돼 경쟁력이 어느정도 확보됐거나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국내시장규모가 작아 해제 시, 대일수입 증가가 미미한 품목 등 지정 실효성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 수입선 다변화 개정내용

〈완전 해제 대상품목(전기관련)〉

H S	품 목 명
8544 20 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3090	전압 100kV초과의 기타 전선(다만, Bus Duct는 제외)

〈부분해제 대상품목(전기관련)〉

H S	현 행	개 정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각종의 전기드릴 (착암기 및 함마드릴 제외)

■ 국산개발 대상품목 및 부품수입 추천기관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16	전기밥솥
	8536	전자개폐기

中古品 수입 대폭 自由化

- 通産部, 네거티브제전환… 230품목 선정 -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중고품 수입이 '96년부터 대폭 자유화된다. 통상산업부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운영하던 중고품 수입제도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국민보건·위생·산업안전 및 환경 등 국제기준이 규제하고 있는 230개 품목이 선정됐는데 이중 기계류등 161개 품목은 해운항만청 등 관련부처나 업종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 추천을 통해 수입이 가능하지만 차량 및 차량부분품 가운데 69개 품목은 종전처럼 수입이 금지된다.

통산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중고품도 신품처럼 수출입공고·통합공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수입절차에 따라 들여올 수 있으며 네거티브리스트에 더해 수출입별도공고가 정하는 요건을 추가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 업종별 수입규제 대상품목(전기관련 품목)

업 종 별	대 상 품 목	추 천 기 관
전기 기기	노와 오븐, 금속의 저항용접기기 4개 품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장설립절차 承認制로 일원화

- 通産部, 산업단지 분양 임대사업 가능 -

올 하반기부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 등으로 구분돼 있는 공장설립절차가 승인제로 일원화된다.

통상산업부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만을 체결하고 따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신부는 또 산업의 선진화 추세에 맞춰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 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 관리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안에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공장건물 등 영구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종래에는 임대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지 못했으나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해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小企業도 외국인 人力배정 검토 － 通產部, 창업 1년이상 · 2년이내 延長 가능 －

통상산업부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종업원 5~9인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현재 사업개시 2년 이상의 중소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 배정기준도 창업 1년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연수기간도 현행 1년이내(1년 연장가능)에서 2년이내(1년 연장가능)로 연장해 외국인 인력이 최대 3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세기업 인력난 타개를 위한 건의문을 보내옴에 따라 통신부는 이같은 건의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의 이같은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외국인 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돼 거의 모든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협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종업원 9인 이하의 영세기업은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혜택에서마저 소외되고 있어 별도의 소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종업원 5~9인의 영세기업에도 외국인 인력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실제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이 최근들어 심화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수생을 끌어들여 활용함으로써 불법체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세기업의 외국인 인력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인력난 해소는 물론 사회문제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자금과 인력, 공업용지, 기술 등 경영자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1년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과 소속감 결여, 생활관습의 차이 등으로 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인력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 는 설명이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직 종업원 부족율이 13.8%에 달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해 상시 종업원 기준 51~100인 업체의 외국인 인력배정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근로자 100~200명의 업체에 대해서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활동 간접부문 규제완화 – 通産部, 2천년대 비전 · 전략 마련 –

정부는 향후 산업정책의 목표를 개방·경쟁과 효율의 조화를 통한 후생극대화로 정하고 산업정책방향을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후생 증대의 조화촉구 ▲신사회 자본의 확충을 통한 산업활동여건의 최적화 ▲산업체질의 강화 및 구조조정 원활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정책협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의 구축 ▲남북 산업협력의 강화 및 통일대비 등으로 설정했다.

또 이를 위해 ▲산업구조의 질적고도화 ▲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 ▲산업기술력의 제고 ▲산업활동의 글로벌화 촉진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배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한 산업발전체제의 구축 ▲소비자·수요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의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천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안)’을 공업발전심의회에 상정·의결했다.

우선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후생 증대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장이 자원배분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독과점규제, 금융제도, 기업결합·합병제도, 기업소유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산업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문에 있어서도 경쟁원리가 작동되도록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통적인 물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적·지적·기술적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전환하고 산업정책의 대상을 제조업 위주에서 관련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체질 강화 및 구조조정 원활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본재산업과 첨단기술산업, 지식집약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획일적·무차별적 보호와 지원을 지양하고 경쟁촉진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생적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북 산업협력 강화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교류 초기단계부터 향후 남북간 산업구조와 산업체배치를 고려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갑작스런 통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한 산업구조의 보완성과 공업발전단계의 차이를 감안한 산업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산부는 장기산업발전비전에서 오는 2천년대초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기술 및 지식 집약화되고 기술전문형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세계를 무대로 한 최적경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첨단제품의 수출이 96~2005년 기간중 연평균 16.5%씩 증가 2005년경에는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50%를 상회하고 자본재도 수출산업화됨으로써 만성적인 수입유발적 체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中企구조조정자금 1.5조원 配定 – 경쟁력취약 中企제품 輸入 최대한억제 –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1조5천억원을 배정하고 기술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대폭 강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당초 배정액 1조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 소진실적이 좋을 경우 2조원까지 증액키로 하는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확정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자동화와 정보화, 시설자금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조5천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4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통해 지원되는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의 1조7천억원에서 올해는 2조3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어나고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로 올해 예산에서 16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0개 재래시장에 대해 재개발 시설건축비로 8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유통사업자들에 대한 공동구매자금으로 200억원, 2천개 소규모점포의 시설개선자금으로 50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공동집배송단지 조성등 유통근대화자금은 지난해의 277억원에서 올해 434억원으로 157억원을 늘린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부도어음 소지자에 대한 대출(1호대출) 규모를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 등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 재래시장의 이전이나 재건축때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해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유망 유치상품 및 경공업제품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의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재조정해 관련상품의 국내수입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손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팔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 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비제조업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지난해보다 4천명 늘어난 3만9천명으로 늘리고 4800억원을 지원해 보육시설 2700개를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 부당스카웃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한편 각 금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96년 關稅減免대상 품목 확대 – 財經院, 대기업 수입 中企 양도도 –

'96년 1년동안 공장자동화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이 404개로 '95년도의 361개에 비해 43개 늘어나게 된다.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의 경우 정밀전자·항공기산업등 7개 업종의 181개로 '95년의 340개에 비해 159개가 줄어들게 된다.'96년 1월 1일부터 수출품제조용 샘플에 대한 관세면제한도가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물품을 중소협력업체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도 관세감면혜택이 승계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년동안 적용할 관세감면대상품목을 고시하는 한편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장자동화물품으로 '95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61개 품목중 134개는 재지정하고 161개는 규격을 변경하여 지정했으며 109개는 신규로 지정, 총 404개를 '96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했다.

또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96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40개 품목중 181개만 '96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관세감면대상 품목의 지정과 관련, 재경원은 공장자동화물품의 경우 인력절감·생산성향상·품질개선등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기존 품목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 협상의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되어 오는 98년에 완전폐지되는 점을 감안, 대폭 축소조정하되 일부 품목은 공장자동화물품중 관세감면대상에 편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이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지정하는 한편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수출품제조용 견품의 관세면제한도를 ‘10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3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소액기증물품의 경우 ‘7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계열화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중소업체에게 양도·임대할 경우 관세감면혜택을 승계시켜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외국에서 수리·가공돼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입기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에서 수리·가공후 1년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해줬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전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전시기간에 대한 요건을 완화, ‘20일 이상’만 전시하고 재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외합작어획물에 대해 관세율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아예 100% 관세감면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관세감면대상물품중 항공기물품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물품이나 장애자용품·인공신장기투석액등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등은 관련부처로부터 ‘용도확인’ 또는 ‘국내생산곤란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제외시켜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자의 손수운전차량에 한해 관세를 감면했으나 장애자의 수송을 위한 특수차량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했다.

자본재산업 技術人力 소득세 혜택범위 고시

정부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 고시했다.

재정경제원 및 노동부에 따르면 현장기술인력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연구보조원은 당해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된다.

또 ▲공업계 또는 공학계분야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로 당해 기업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공고졸업자 또는 직업훈련과정 1년 이상 이수자로서 당해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당해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로서 직업훈련기관장이 현장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확인한 자등도 해당된다.

이같은 현장기술인력의 확인은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교부하는 인정서로, 전문대 또는 공고이상 졸업자 및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제출한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로 당해 사업주에 의해 각각 이뤄진다.

당해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제출한 현장기술인력확인신청서에 의해 직업훈련 기관장이 심사후 확인 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같은 현장기술인력으로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품·소재共用化 지원 강화 – 工振廳, 자금지원 · 兵役特例 · 인증획득등 –

부품·소재 공용화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용화 규격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구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획득,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공업진흥청은 부품·소재의 공용화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시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시책은 부품·소재의 공용화에 따른 설계변경, 시작품 제작 및 공용화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설비투자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업계의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 통상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공진청은 지원시책을 공용화규격 개발단계, 공용화 추진단계, 공용화 완료단계, 공용화제품 구매단계 등 4단계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규격개발 단계에서는 표준규격 개발 소요비용의 70%까지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에서 지원한다.

공용화 추진단계에서는 공용화규격을 제품설계 등에 반영하고자 할때 설계변경 및 시작품제작비용은 산업기술자금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비용은 중소기업자동화자금 및 지방중속업육성자금에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완료단계에서는 공용화제품 생산에 성공한 업체가 여타 제품개발을 추진할때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기술자금에서, 여타 제품의 자동화·정보화 등의 설비투자를 할때는 중소기업자동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추가지원한다.

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공용화제품 또는 공용화제품을 사용한 완성품은 정부기관에서 우선구매하고 관련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면제 해주는 한편 KS·EM 등 각종 인증획득시에도 우선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용화의 과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용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자동차변속기·21인치 컬러TV 브라운관용 새도우마스크 등 대규모 공용화사업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산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구매단계에서는 공용화제품 또는 공용화제품을 사용한 완성품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해 외화대출지원 대상품목으로 지원한다.

한편 공진청은 부품·소재 공용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품·소재 공용화사업을 자본재표준화사업으로 일원화해 일관성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품목소관 생산자단체를 공용화 추진단체로 지정해 공용화 추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케 할 계획이다.

■ 공용화 추진 관련 지원 사항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대 상
규격화추진단계	◦ 표준화 사업비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
공용화추진단계	◦ 설계변경 및 시작품 제작 ◦ 치공구·금형 및 설비투자	◦ 산업기술자금 ◦ 중소기업자동화자금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공용화완료단계	◦ 여타 제품 개발 ◦ 여타 제품 설비투자 ◦ 기타	◦ 산업기술자금 ◦ 중소기업자동화자금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 기간산업체 지정 ◦ 우선구매 ◦ 검사·형식승인 면제 ◦ 인증획득 ◦ 포상
구 매 단 계	◦ 공용화제품 및 공용화 제품을 사용한 완성품	◦ 외화대출자금

한국선급 · 中企인증센터 追加 – 국내 ISO 9000 전문인증기관 9개로 늘어 –

공업진흥청은 한국선급과 중소기업인증센터를 ISO 9000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한국품질인증센터 등 기존의 7개 기관을 비롯해 모두 9개의 인증기관이 공진청의 지정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받은 두 기관은 각각 선박과 중소기업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인증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어 ISO 9000 인증의 본격적인 전문화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존 국내인증기관의 경우 선박이나 수송분야에 대한 ISO 9000 인증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외국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한국선급의 인증기관 지정으로 선박 · 수송장비 · 기계분야 등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ISO 9000 인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선급의 인증기관 지정은 IMO(국제해사기구)가 93년에 채택해 내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인 ISM코드(국제선박안전관리코드)인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調達物資 조기 발주 – 50%이상 中企할애방침 –

조달청은 정부조달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를 1 · 4분기중에 조기 발주하고 연간 계약물량의 절반이상을 중소기업과 계약하기로 했다.

특히 中企수요가 많은 알루미늄 · 전기동 등 비철금속과 철제 빌레트, 골판지 원지 등 비축물자 방출규모를 작년의 85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고 외상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외상금리는 6%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총액인 3조9천억원의 35.9%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을 1 · 4분기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공사 계약도 연간 예정액 4조8천억원의 41.7%에 해당하는 2조원을 1·4분기중에 발주하고 긴급공고나 단축공고 등을 통해 입찰 및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올 한해동안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자와 공공공사 계약, 비축물자 방출등 조달계약물량 8조8천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9천억원을 중소기업에게만 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中企 생산품목은 전량 중소기업제품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아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나 농공단지 생산품목은 물론 신기술 개발실적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과도 수의계약을 실시, 판로를 확보해줄 방침이다.

또 中企에 대한 선급금 지급폭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늘리는 등 선금 지급조건을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증대를 위해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유도하고 입찰자격 사전심사(PQ)에서 중소기업과 공동도급하는 업체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기용품 시험수수료 개정 고시 – 工振廳, 정격 20이상, 부품등 가산 –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시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공업진흥청 고시 제1996-1호, '96. 1. 3)했다.

-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형식승인 확인 유효기간 갱신 및 개선명령등 형식승인에 준하여 시험의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지정시험 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1건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정격이 2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정한 1건당 수수료에 1건당 수수료의 5할을 가산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부품 또는 부속품의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되는 부품, 부속품의 시험수수료를 가산한다.
- 2가지이상의 기능을 가진 전기용품은 기능별로 시험수수료를 가산한다.
-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의거 전자파장해시험 및 단락차단성능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1건당 수수료에 다음표에 의한 수수료를 가산한다.

시험 항 목	1건당 수수료(원)
○ 전자파장해 시험	236,000
○ 단락차단성능 시험	250,170(다만, 삼상인 경우에는 25%를 가산한다.)

○ 전기용품 전기절연물 시험을 실시할 때는 1건당 수수료에 다음 표에 의한 수수료를 가산한다.

시험 항 목	시험 종 류	수 수 료 (원)
전기절연물시험	볼푸레셔 시험	66,280
	내후내열성 시험	25,140
	난연성 시험	34,110

○ 현장시험시에는 시험수수료의 20%를 할인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단위: 원)

(단위: 원)

시험 받을 전기용품 명	개 정
1. 절연전선	
(1) 고무절연전선	22,600
(2) 합성수지절연전선	24,200
(3) 네온전선	
가. 절연체가 고무인 것	22,600
나. 기타인 것	25,100
2. 케이블	
(1) 크로르프렌 외장케이블	22,600
(2) 비닐외장케이블	
가. 절연체가 고무인 것	24,000
나. 기타인 것	24,700
(3) 폴리에치렌 외장케이블	
가. 절연체가 고무인 것	22,600
나. 기타인 것	24,100
(4) 기타 케이블	24,100
3. 코오드	
(1) 절연체가 고무인 것	21,000
(2) 기타인 것	22,600

시험 받을 전기용품 명	개 정
4. 캡타이어 케이블	
(1) 외장이 고무인 것	21,000
(2) 기타인 것	24,000
5. 용접용 케이블	21,000
6. 전기온상선	
(1) 절연체가 고무인 것	22,500
(2) 기타인 것	24,200
7. 퓨우즈	
(1) 실퓨우즈	15,900
(2) 온도퓨우즈	17,500
(3) 고리퓨우즈	16,100
(4) 기타퓨우즈	20,300
8. 점멸기	
(1) 텁블러 스위치	16,700
(2) 로타리 스위치	16,700
(3) 폴 스위치	16,700
(4) 놀름보던 스위치	16,700

(단위: 원)

(단위: 원)

시 험 받 을 전 기 용 품 명	개 정	시 험 받 을 전 기 용 품 명	개 정
(5)중간 스위치	16,700	(2)리모트콘트롤리레이용 변압기	11,600
(6)펜단드 스위치	16,700	(3)전압조정기 및 가정용소형변합기	11,600
(7)리모트 콘트롤리레이	17,400	(4)네온변압기	14,000
(8)타임 스위치	28,700	(5)연소기구용 변압기	14,000
(9)가로등 스위치	16,700	(6)무정전 전원장치	148,200
(10)광전식 자동점멸기	16,700	13. 방전등용 안정기	
(11)전자개폐기 조작용스위치	16,700	(1)오존발생기용 안정기	12,100
(12)기타점멸기	16,700	(2)형광등용 안정기	9,000
9. 개폐기		(3)수은등용 안정기	9,900
(1)커버나이프 스위치	16,700	(4)나트륨등용 안정기	9,900
(2)상자 개폐기	22,700	(5)살균등용 안정기	9,900
(3)압력 스위치	20,300	(6)기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9,900
(4)재봉기용 콘트롤러	28,900	14. 소형교류전동기	
(5)전자개폐기	28,900	(1)반발기동 유도전동기	24,200
(6)배선용차단기	39,100	(2)분상기동 유도전동기	24,200
(7)누전차단기	39,100	(3)세딩코일 유도전동기	24,200
(8)자동온도조절기	22,600	(4)컨덴서기동 유도전동기	24,200
10. 접속기		(5)컨덴서 유도유동기	21,600
(1)꽃음접속기	14,000	(6)정류자 전동기	21,600
(2)나사플리그	14,600	(7)농형삼상 유도전동기	21,600
(3)소켓		(8)기타 단상전동기	21,600
가. 점멸기 부착인 것	16,700	15.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나. 기타인 것	14,600	(1)전기 그라인더	16,100
(4)나사로우젯		(2)전기 샌다	16,100
가. 점멸기 부착인 것	16,700	(3)전기 포리셔	16,100
나. 기타인 것	14,600	(4)전기 드릴	16,100
(5)조인트 박스	14,000	(5)전기 대폐	16,100
(6)기타인 것	16,200	(6)전기 톱	16,100
11. 전류제한기	20,200		
12. 소형단상변압기류			
(1)기타가정기기용 변압기	12,100		